



제302회 정례회

2011.07.14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교육의원 박상필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1년 7월 1일

○ 회부일자 : 2011년 7월 7일

3. 제안이유

가. 2009년에 개정된 「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나, 평생교육수요자 수의 급증과 수요자의 학습욕구 다양화 등 현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.

나. 이에 「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평생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기본 취지를 반영하고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평생학습관의 지정·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평생학습관 기능과 지정 및 지정절차를 정함(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)
- 나.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, 회의와 수당 등을 정함(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)
- 다. 평생학습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·감독 등에 대해 정함(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평생교육수요자의 급증에 따른 다양한 학습욕구와 평생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기본 취지를 반영하여, 그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은 「평생학습관 지정절차, 운영위원회 구성·기능·회의, 수당 등, 지도」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, 그 밖에 현행 조문을 일부 보완하는 등 기존 6개 조문을 12개 조문으로 정비한 것임.
-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충청북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와 수요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, 평생교육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.

관계 법령 발췌

□ 평생교육법

- 제21조(시·군·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·도교육청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교육기본법

- 제3조(학습권) ①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,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. [전문개정 2007. 12. 21]
- 제10조(사회교육)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.
- ② 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.
-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·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7. 12. 21]